

의안번호	제 13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3월 일 (제 298 회)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장 선 배 의원
발의연월일	2011년 2월 25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발의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발의자 : 장선배 의원(대표발의)

심기보, 김도경, 김광수

노광기, 손문규, 김영주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추가(안 제3조)
 -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추가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
 -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조문 신설(안 제10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제3조)
 - 도 자활기금 및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각 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으로 관련 조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 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 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을 “보건복지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신설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발생한 때에는”을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 한다”를 “회무를 총괄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 2인”을 “위원 2명”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제11조의2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p>제2조(기능)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생략) 3. (생략)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신설></p> <p>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신설></p> <p>7.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신설></p>	<p>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p> <p>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p> <p>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p> <p>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p> <p>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p> <p>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p> <p>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p>	<p>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p> <p>1.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p> <p>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생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② (생략)</p>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및 의사) ①~② (생략) ③ 정기회는 <u>연 1회 이상</u>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는 <u>연 1회</u> 개최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u>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u>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u>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 에 참석한 <u>위원 2인 이상</u> 의 서명 또 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 에 참석한 <u>위원 2명 이상</u> 의 서명 또 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7.30>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7.30, 2008.2.29, 2010.1.18>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7.12.14>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2008.6.25>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